

잉여식품 기부시에 회계장부처리

Q 영업 후에 유통기한일이 촉박한 식품을 국내 식품기부단체에 기부하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들을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 적용을 위하여 해당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하고자 합니다. 무상 지급한 식품에 대하여 구매 했을 때 재료비 (경비)로 환산하여 그 값어치 만큼 필요경비 (재료비) 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즉, 판매되지 않아 매출은 없으나 필요경비금액에는 산입시켜 호텔이 경비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해당 식품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554, 2001.04.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래 여부 확인

Q 당사로부터 무상사급 원재료를 제공받은 업체가 업체 본인 귀책으로 무상사급 받은 원재료가 손 망실 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업체의 의견은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세법적인 이슈를 우려)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이고 실질적으로 당사재고를 업체 귀책으로 손 망실 되었으므로 클레임(잡이익/잡손실) 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법에 근거했을때 타당한 증빙처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무상사급의 경우라면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귀사에게 있는 상태이므로, 귀사에게 원재료를 공급받

은 업체의 귀책으로 손망실되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거래와 상관없는 클레임처리가 타당합니다.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Q 회사 생산사용 목적으로 삼성에서 장비입찰을 통해 낙찰 받고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된 자산이 있습니다.
이후, 해외 자매회사로 이전 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모든 비용 및 장비 가격을 해외 자매 회사로부터 청구 받기로 했습니다.
장비입찰 시, 국내 Bidding 업체를 통해, 장비가격+ 낙찰성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구매대행 형태로 비취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기 공제 받은 매입부가세에 대해 세무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지요?

A 국내매입자산을 해외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가 해외 자매회사의 단순 구매대행 인지의 여부 및 기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회피 여부 등의 세무상 쟁점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Q IPP 연계로 고용한 인턴 사원에게 실습지원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로부터 실습지원금 금액을 payback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습비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급여 계정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실습지원금의 최종 부담자는 귀사가 아니고 학교이므로 선지급시 귀사의 비용(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payback 시점에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